2020.11.20.~12.18./ 29일간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 사 결 과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칙안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	원안가결
장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아동복지 증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	원안가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	원안가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원안가결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안 건	심사결과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장성 공설운동장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청운지하차도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황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삼계면 맑은물 푸른 농촌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원안가결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장성군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황룡강 지방정원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원안가결
2021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2021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0. 30.
- **제 안 자** : 이태신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 구성 등 (안 제3조),
  - 임기(안 제4조)
  - 위촉 및 해촉(안 제5조~6조)
  - 분과위원회(안 제7조)
  - 회의(안 제8조)
  - 의견청취(안 제9조)
  - 수당 등(안 제10조)
  - 운영세칙(안 제1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20. 12. 08.)

2. 2020년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 **제출일자** : 2020. 10. 30.
- **제 안 자** : 이태신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촉 및 해촉(안 제2조)
- 분과위원회(안 제3조)
- 운영규정(안 제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20. 12. 08.)

3.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제출일자** : 2020. 10. 30.

▪ **제 안 자** : 차상현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사용・집행 (안 제3조)
- 사용제한 (안 제4조)
- 예산집행 자료 작성 (안 제5조)
- 사용내역 공개(안 제6조)
- 정보공개 범위(안 제7조)
- 교육 및 점검 등(안 제8조)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11. 13.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조직개편(′ 20. 7. 1.)에 따른 장성군 실·과 명칭을 일괄개정하여 각 부서별 개별 입안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신속한 개정으로 현행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가. 기획감사담당관 → 기획실장

나. 일자리경제과장 → 경제교통과장

다. 농업축산과장 → 농식품유통과장

라. 유통담당 → 농산물마케팅팀장

마. 인재육성담당 → 평생학습팀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과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개별 입안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신속한 개정으로 법 적합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

가.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복지법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 친환경농어업법

다.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인 공공요금 미반환 원칙 규정(′19년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의 위법성을 해소하여 주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 각 부서별 개별 입안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 1~3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

-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기획정비 과제로서 장성군 각 조례에 있는 과태료 관련 상위법 위반 내용을 정비하여 법 통일성을 기여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기간 및 법원 통보 기간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 제34조제1항,제2항)

나.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

-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7조제4항)

다.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과태료 규정 삭제

-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6)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조례를 우선 적용하는 규정 삭제

-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4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상 용어를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개정하여 법 적합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 양양(昂揚)하다 → 드높이다
- 사력(沙礫) → 자갈
- 폭원(幅員) → 너비
- 쌍태아(雙胎兒) → 쌍둥이

- 내경(內徑) → 안지름
- 상오(上午), 하오(下午) → 오전, 오후
- ~ 관하여 필요한 → ~에 필요한

· 알기 쉬운 법령 기준
-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범위내에서 → 범위에서
- 법령 이름 띄어쓰기
- 타 법령 인용할 경우 낫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서명	출연기관	2021년 출연금	사업내용	관련법령
합 계	**4개 기관**	**2,735,267**		
재 무 과	한국지방세 연구원	4,257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전국지자체공동사업)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미래 성장개발과	(재)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나노 바이오연구센터)	100,000	나노산업 발전 및 지역 내 생산품을 활용한 산업 기반조성 등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전남신용보증재단	58,000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등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평생교육센터	(재)장성장학회	2,566,010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7,000	인재육성 및 기부문화 선도 (교육책자 판매대금)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유명무실화에 따른 장학금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 이장 및 청년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자격 확대(안 제2조)

- 지급대상 : (현행) 중・고등학생 ⇨ (개정) 중・고등학생, 대학생

・ 구체적・객관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4조)

- 선　　발 : (현행)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 심사
(개정) [별표] 평가기준 신설 (붙임)

・ 장학금의 정액지급 가능 규정 마련(안 제6조)

- 장학금액 : (현행)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개정)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200만원

・ 장학금 지급 시기 변경(안 제7조)

- 지급시기 : (현행) 학기별 지급
(변경) 중·고등학생 연 일시 지급, 대학생 연 2회 분할 지급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현 공공실버주택 내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은 이용대상이 실버주택입주자 및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실적적인 노인복지관(노인복지법)의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

인복지 서비스 기능을 위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안 제1조∽제3조)

· 업무, 이용대상, 이용료(안 제4조∽제6조)

-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등 노인복지 향상 업무

·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사항(안 제7조∽제9조)

- 위탁운영자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5년 이내)

· 지도·감독, 손해배상, 자체 운영 규정 등(안 제10조∼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현행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는 보육과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여 보육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정비하고, 아동위원회와 분리· 운영하고자함.

▪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보육 부분 및 아동위원회 부분 수정 및 삭제**

- 보육의 기능(안 제3조)
  ·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추가
  ·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삭제
  * 사유 : 행정처분 사항이며,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

한 행정처분 조치
-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7호) : 아동위원회 내용 삭제
-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7호~14호) : 아동위원회 내용 삭제

·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변경 및 구성비율 신설(안 제2조)

- 근거 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현행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는 보육과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여 보육과 분리·운영하고자함.

▪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 제6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 제척 등(안 제7조 ~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우선조치(안 제10조 ~ 제12조)

· 의견의 청취, 비밀누설 금지, 수당 등(안 제13조 ~ 제15조)

· 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안 제16조 ~ 제19조)

·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20조 ~ 제21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22조 ~ 제25조)

· 아동급식 지킴이 구성(안 제2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2020. 5. 28)된 내용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대상 문구 추가(안 제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에서와 같이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청 및 신고 조항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개정(안 제1조)

- (현행)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개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

· 지원요청 및 신고 신설(안 제4조)

-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6. 장성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7조의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

- 현장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관·단체 간의 활동 조정 및 관리
- 자원봉사인력 배분계획 수립 및 배치
- 자원봉사담당 공무원의 행정지원 및 현장 자원봉사 활동 접수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도시지역 중「지방세법」제112조 및「장성군 지방세 조례」제5장 13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 후 과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장성군 나노산단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다.

- 장성군 진원·남면 일원 나노 산업단지 **지정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 2007-112호)
-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장성군 고시 제2012-83호)

읍면동	면 적(㎡)	추 가 적 용 대 상 지 역
합 계	896,549.6	
진원면	221,579.9	산동리 나노산단 지역
남면	674,969.7	삼태리 나노산단 지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

로컬푸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밥상에 필요한 다양한 비유전자변형(Non-GMO) 가공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인 공동이용 가공시설인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에 관련된 건물신축을 추진코자 함.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필지/ 1동	490	1,200,000	
취득	토지매입	-	-	-	
	건물신축	1동	490	1,200,000	도비 50%, 군비 50%
	기 타	-	-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9.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조직개편으로 도서관 운영 부서가 평생교육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서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위치, 용어 정의, 기능(안 제1조 ~ 안 제4조)

- 도서관 위치, 용어 정의, 도서관의 기능

❍ 도서관 운영(안 제5조 ~ 안 제12조)

- 도서관 출입의 제한, 자료의 대출 및 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등

❍ 독서 문화 진흥(안 제13조 ~ 안 제18조)

-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시행
- 소외계층 독서 활동 지원, 문화강좌 운영, 독서동아리 활성화, 관계기관 협력 등

❍ 도서관 운영위원회(안 제19조 ~ 안 제23조)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0. 30.
- **제 안 자** : 임동섭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영세농가의 쌀 건조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농가 소득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 각 호 변경 및 신설

-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변경한다

9. 가격이 하락 등 지역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제1항제8호를 신설한다.

8. 소유농지 20,000㎡이하인 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

- **의결결과 : 수정가결**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제1항제8호 소유농지 20,000㎡ 이하인 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을 **“공공비축미 및 농협 수매시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수정 가결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8호 소유농지 20,000㎡ 이하인 농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	제8호 ---------- ---- 공공비축미 및 농협 수매시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

21.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안전건설과장)

▪ **제안이유**

- 장산지구 2개(장산제, 임곡제) 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매년 물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산리 임곡들, 장산들녘에 풍부한 수자원확보와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군 전환사업)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9,670백만원(군 전환사업)

- 계속사업비 : 9,670백만원(군비 96.7억)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9,670	
2020년	1,0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
2021년	3,000	• 우회도로 및 저수지 제방 축조 등(장산제)
2022년	3,000	• 우회도로 및 저수지 제방 축조 등(임곡제)
2023년	2,000	• 저수지 축조 및 부대시설 정비 등(장산제, 임곡제)
2024년	670	• 저수지 축조 및 부대시설 정비 등(장산제, 임곡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2.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안전건설과장)

▪ **제안이유**

- 황룡강 호안정비, 저류지 조성 등을 통해 하천의 치수 및 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식생복원, 수질정화습지 조성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17년 국토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전라남도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20,500백만원에서 23,400백만원으로 조정되어 계속비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당초 : 20,500백만원【재원-국비 50%+도비 15%+군비 35%】
  - 변경 : 23,400백만원【재원-국비 2.5%+도비 62.5%+군비 35%】
- 계속사업비
  - 당초 : 20,500백만원(국비 102.5억, 도비 30.75억, 군비 71.75억)
  - 변경 : 23,400백만원(국비 6억, 도비 146.1억, 군비 81.9억)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23,400	
2019년	1,2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
2020년	6,000	•하천 정비사업(호안 및 보, 정화습지 조성)
2021년	3,700	•하천 정비사업(호안 및 보, 정화습지 조성)
2022년	7,000	•하천 정비사업(자전거도로 및 생태광장 조성)
2023년	5,500	•하천 정비사업(생태광장 등 조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3.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안전건설과)

▪ **제안이유**

- 평림천의 주오염원 제거, 어류 및 야생동물 섭식공간 제공으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7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1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2020년 3월 전라남도의 생태하천 복원심의에 따라 총사업비가 20,000백만원에서 21,400백만원으로 조정되고,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2022년까지 연장하고자 함.23,400백만원으로 조정되어 계속비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당초 : 20,000백만원【재원-국비 50%+도비 -%+군비 50%】
  - 변경 : 21,400백만원【재원-국비 11%+도비 39%+군비 50%】

○ 계속사업비
  - 당초 : 20,000백만원(국비 100억, 도비 -억, 군비 100억)
  - 변경 : 21,400백만원(국비 23.5억, 도비 83.5억, 군비 107억)

○ 계속비기간
  - 당초 : 2018 ~ 2021(4년)
  - 변경 : 2018 ~ 2022(5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21,400	
2018년	7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9년	4,0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 호안정비
2020년	7,000	• 생태하천 복원(호안, 보 및 교량정비)
2021년	6,600	• 생태하천 복원(호안, 보, 교량 및 생태습지 조성)
2022년	3,100	• 생태하천 복원(생태습지 및 여울)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4. 장성 공설운동장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미래성장개발과장)

▪ **제안이유**

- 군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품격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0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기존 사업비가 220억원에서 234억으로 14억 증액되었으며, 우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2021년까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계속비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23,400백만원【재원 : 국비30%+군비70%】

- 계속사업비 : 23,400백만원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23,400	
2016년	500	•군계획시설(공설운동장) 설계용역
2017년	5,240	•공설운동장 조성(부지조성 등)
2018년	5,000	•공설운동장 조성(구조물 설치 등)
2019년	3,334	•공설운동장 조성(공원 등 조성)
2020년	9,326	•공설운동장 조성(부대시설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5.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불안전(D등급)시설에 산정된 청운지하차도 개설이 필요되며, 호남선철도로 인해 단절된 장성읍의 시가지 교통흐름을 원활 및 공동주택등 주거단지 확장에 따른 교통량 분산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31,000백만원(재원 - 군비 100%,)

- 계속사업비 : 31,000백만원(군비 31,000)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31,000	
2020년	3,000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편입토지보상
2021년	10,023	• 지하차도(U-Type)구간 개설
2022년	17,977	• 접속도로 및 부대시설 추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6. 황룡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2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10월 농림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기존 사업비 78억원에서 80억원으로 2억원 증액되어 계속비사업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8,000백만원(재원 - 국비 70% + 군비 30%)
- 계속사업비 : 8,000백만원(국비 5,600, 군비 2,400)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8,000	
2018년	400	•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2019년	1,015	•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2020년	1,567	• 기본계획, 실시설계, 지역역량강화
2021년	3,229	• 황룡커뮤니티센터, 소통광장, 지역역량강화
2022년	1,789	• 옐로우 안전마을길, 지역역량강화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7.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력화 및 농촌가치 보존을 목적으로 한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1,964백만원(재원 - 군비 100%, 지방이양사업)
- 계속사업비 : 1,964백만원(군비 1,964)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1,964	
2020년	410	• 기본계획, 실시설계, 지역역량강화
2021년	300	• 컬러잠업테마관, 지역역량강화
2022년	679	• 10리 사랑길 복원, 지역역량강화
2023년	575	• 잠업농장, 지역역량강화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8.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안이유**

-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은 평림댐과 장미공원을 연계한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0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 협의 일정 지연으로 2021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990백만원(재원 - 군비 100%, 지방이양사업)
- 계속사업비 : 990백만원(국비 693, 군비 297)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990	
2018년	200	• 기본계획, 실시설계, 지역역량강화
2019년	530	• 생태문화교류센터, 장미로드, 지역역량강화
2020년	260	• 생태환경정비, 지역역량강화
2021년	-	• 생태문화교류센터, 장미로드, 생태환경정비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9.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농식품유통과장)

▪ **제안이유**

-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기본원칙, 용어정의 등**(안 제1조 ~ 안 제5조)
  - 먹거리 기본권 보장 목적, 용어정의 등
-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안 제9조)
  - 장성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계획 시행
  - 지역 먹거리 유통·소비 촉진 등 먹거리 정책사업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안 제18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해촉, 의견청취
  - 공공형 운영법인 설립 근거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0.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제안이유**

-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합류식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 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처리장 운영 및 방류수역 수질 보존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 2019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14,456백만원(재원 - 국비 50% + 군비 50%)

○ 계속사업비 : 14,456백만원(국비 7,228, 군비 7,228)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14,456	
2020년	70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협의
2021년	2,088	• 노후 하수관로 정비(L=3km)
2022년	11,668	• 노후 하수관로 정비 L-=11.5km)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1.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제안이유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관로체계 현실화(블록화)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도시설 관리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 2019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16,530백만원(재원 - 균특 50% + 군비 50%)
- 계속사업비 : 16,530백만원(균특 8,265, 군비 8,265)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16,530	
2020년	4,143	• 기본계획, 실시설계(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작성 보완)
2021년	4,490	•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2022년	3,306	• 관망정비(노후관로개량)
2023년	2,152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24년	2,439	• 누수탐사 및 복구사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2.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산림편백과장)

▪ 제안이유

- 황룡강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장성의 문화와 색채를 담은 황

룡강 오색정원을 조성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9년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대상지로 확정되어

-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9,000백만원【재원 - 도비 55%, 군비 45%】
  - 계속사업비 : 9,000백만원(도비 49.5억, 군비 40.5억)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합 계	9,000	
2020년	55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
2021년	1,000	• 지방정원 조성사업 착공
2022년	7,450	•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3. 2021년도 예산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

▪ **주요내용**

1 총 괄

○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160억원보다 8.6%인 보다 357억원이 증가된 4,517억원임.

○ 그 중 일반회계는 4,422억원, 특별회계는 95억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예산안 규모

1 총괄(편성안) : 4,517억원 (2020년 대비 357억원 증 / 8.6%)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 감		비 고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517	4,160	357	8.6%	
일반회계	4,422	4,046	376	9.3%	재해복구 267억원 포함
특별회계	95	114	△19	△16.7%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세입예산 : 원안 가결

○ 세출예산 : 수정 가결(수정 세부내역 별첨)

34. 2021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 2020. 11. 13.
- 제 안 자 : 장성군수
- 주요내용

1 기금운용계획 총괄

□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6종의 기금운용(수입 · 지출) 계획은 10,257백만원으로 각 기금별 내역은 <표 1>와 같음.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수입 · 지출은 1,383백만원으로

- 수입은 예수금 1,383백만원이며,
- 지출은 예치금 1,383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 지출은 1,818백만원으로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75백만원, 예치금회수 1,523백만원, 이자수입 20백만원 등이며,
-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사업추진은 253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1,564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 지출은 2,218백만원으로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백만원, 예치금회수 1,898백만원, 이자수입 20백만원 등이며,
- 지출은 체육선수 육성에 20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2,198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 사회복지기금의 수입 · 지출은 3,310백만원으로

- 수입은 예치금회수 3,254백만원, 이자수입 25백만원, 전입금 20백만원, 기타수입 10백만원 등이며,
- 지출은 노인복지사업 지원 107백만원, 예치금 3,202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 지출은 1,450백만원으로

- 수입은 군 전입금 320백만원, 예치금회수 1,114백만원, 이자수입 16백만원 등이며,
- 지출은 주민지원사업 150백만원,
  예치금 1,3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 지출은 79백만원으로

- 수입은 도비 보조금 6백만원, 예치금 회수 71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 기타수입 1백만원이며,
- 지출은 향토식당 참가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원 등 6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73백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1> 2021년 자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6개 기금	10,258	915	6	1,383	7,861	82	11	10,258	537			9,721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383			1,383				1,383				1,383	
재난관리기금	1,818	275			1,523	20		1,818	254			1,564	
체육진흥기금	2,218	300			1,898	20	2,218	20				2,198	
사회복지기금	3,310	20			3,255	25	10	3,310	108			3,202	
폐기물처리 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50	320			1,114	16	1,450	150				1,300	
식품진흥기금	79		6		71	1	1	79	6			7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별 첨 1

2021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451,700,000천원

가. 삭　　감 : 해당없음

나. 증　　액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51,700,000	-	-	-	451,700,000
일반회계	442,229,761	-	-	-	442,229,761
특별회계	9,470,239	-	-	-	9,470,239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451,700,000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1,001,600천원

2) 특별회계 :　20,000천원

나. 증　　액

1) 일반회계 : 1,001,600천원

2) 특별회계 :　20,000천원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51,700,000	1,021,600	1,021,600	-	451,700,000
일반회계	442,229,761	1,001,600	1,001,600	-	442,229,761
특별회계	9,470,239	20,000	20,000	-	9,470,239

라. 삭감조서

1) 일반회계

(단위 천원)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계	12건	2,093,212	1,001,600	1,091,612	
201-02	장성21세기 바송 운편료	55,212	20,000	35,212	
401-01	행정업무용 PC 본체구입	100,000	50,000	50,000	
201-3	축제 아카데미 운영	20,000	20,000	-	
307-04	황룡강 노란 꽃잔치	600,000	100,000	500,000	
401-01	수목관리(전정작업 영양제)	40,000	40,000	-	
401-01	황룡강 가동보 조명공사	300,000	100,000	200,000	
401-01	약수천 보행데크 정비 사업	500,000	400,000	100,000	
401-01	장성근리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	50,000	50,000	-	
206-01	황룡강 경관림 가꾸기 사업(재료비)	40,000	40,000	-	
401-01	중앙도서관 전기 분전 공사	7,000	7,000	-	
207-01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225,000	54,600	170,400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56,000	120,000	36,000	

2) 특별회계

(단위 천원)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401-01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용역비	50,000	20,000	30,000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800	예비비	0	1,001,600	1,001,600

2) 특별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800	예비비	0	20,000	20,000